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8. 26 선고 2020가합122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1. 8. 12.

판 결 선 고 2021. 8. 26.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7. 11. 7. 체결된 16,000,000원, 2017. 11. 13. 체결된 20,000,000원, 2017. 11. 13. 체결된 46,000,000원, 2017. 12. 8. 체결된 16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B의 아들이고, B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714,807,600원의 조세채무가 있는 자이다.

(단위: 원)

관할	세목	순번	귀속	최초납부기한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세액	체납액
순천	양도 소득세	1	2001	2001. 5. 31.	2001. 1. 30.	5,682,580	13,364,560
		2	2001	2001. 8. 31.	2001. 4. 26.	2,546,372	4,506,680
		3	2001	2001. 10. 31.	2001. 6. 26.	16,844,430	29,814,450
		4	2017	2019. 1. 31.	2017. 11. 30.	583,914,240	667,121,910
합계						608,987,622	714,807,600

나. B의 부동산 매도

B는 2017. 10. 3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 자신이 소유하는 순천시 D 임야 3,5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15억 원에 매도하고, C은 2017. 11.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와 C은 위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방식에 관하여 B의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C은 2017. 11. 3. 위 매매대금 중 4억 원을 B의 지인 E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B의 피고에 대한 증여

1) E는 2017. 11. 6. 위 농협계좌에서 3억 9,800만 원을 인출하여 B에게 주었고, B는 같은 날 위 3억 9,8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였다.

2) B는 F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2017. 11. 7. 피고에게 1,600만 원을 이체하였고, 2017. 11. 13.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같은 날 4,600만 원을 피고가 구입하는 차량대금으로 대신 지급하였다. 또한 B는 2017. 12. 8. 피고에게 피고가 매수하는 순천시 G, H호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교부하여 증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 1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중 위 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조세채권인 47,684,690원은 B의 피고에 대한 각 증여행위 이전에 성립된 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3) 나아가 원고의 B에 대한 위 표 순번 4 기재 조세채권 667,121,910원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행위에 의해 B에 부과된 당해세로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19. 1. 31.경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채무자 B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

1) B의 재산상태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는 2017. 11.경 적극재산이 없었던 사실,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714,807,600원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B는 피고에 대한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B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하였으므로, 각 증여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B에게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의사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수익자 피고의 악의에 관하여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이러한 경우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B의 사해행위를 통해 금원을 이전받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I종친회의 종손이고, 선대 종손인 B가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돈을 주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며, B에게 조세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갑 제5, 9호증, 갑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는 피고와 상당기간 함께 거주한 점, ② 피고는 B가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부동산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의 일을 돕기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④ B는 2010. 6. 22.경 K로부터 순천시 L 임야 4,086㎡를 매수하여 이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고, 이를 M에게 매도했다가 다시 B의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C에게 매도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I종친회의 종중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 1) B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2)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자체의 반환으로 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직접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 3)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로 인해 반환될 목적물은 B가 피고에게 지급한 현금 2억 4,200만 원인데, 현금은 그 성질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직접 원물반환에 갈음한 가액배상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 범위 내인 2억 4,200만 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마.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억 4,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임성철, 판사 김준석, 판사 이유경